

**2022년도 제3차 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년도 제3차 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 추진방향 >**

**비 전**

융합형 글로벌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혁신성장 촉진에 기여

**사업 목표**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혁신을 이끌 융합형 글로벌 혁신인재 육성

구분	글로벌 인재양성	경쟁력 확보
과학적 성과 공동연구	연구실적 공동논문 게재	후속과제 발굴 공동연구 신규과제
사회적 성과 인재양성	연구자 양성 양성인력	취업률 관련분야 취업

**기본 방향**

- ① 임상적 지식을 바탕으로 신기술 융합연구 수행이 가능한 의사과학자 양성
- ② 보건의료 현장수요와 연계되는 융합형 글로벌 혁신인재로 육성

# I. 공고 개요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명)	세분류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 대상	과제구성 요건* (아래 참고)	선정예정 과제수 (내외)
K-Medi융합 인재양성지원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	현장수요 연계형 인력교류지원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0백만원)	1년 6개월 이내 * 1차년도 6개월	산·학·연·병	①, ④ ※위탁과제 불가	15
		감염병 핵심연구인력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0백만원)	1년 이내 * 1차년도 6개월	산·학·연·병	①, ④ ※위탁과제 불가	18

- ① (주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참여하는 형태
- ② (주관+공동)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형태
- ③ (주관+공동, 주관+공동) 복수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참여하는 형태
- ④ (복수 주관 불가) 2개 이상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구성된 과제는 참여 불가

① 주관

② 주관+공동

③주관+공동, 주관+공동

④ 복수 주관 불가

과제 구성  
요건  
(예시)

주관	OO대 / A교수
----	-----------

주관	OO대 / A교수
공동	△△대 / B교수

주관	OO대 / A교수
공동	△△대 / B교수
주관	OO대 / C교수
공동	△△대 / D교수

주관	OO대 / A교수
공동	<del>△△대 / B교수</del>
주관	<del>OO대 / C교수</del>
공동	△△대 / D교수

※ 지원분야·세부분야별 최종 선정과제 수와 지원기간 등은 신청 과제의 우수성, 접수 경쟁률, 연간 연구개발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과 연구개발비는 변경될 수 있음

## II. 신청요건

###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3책5공)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연구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과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과제(기관)	참여연구자	

- 다음의 경우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함

- ① 제안요청서(RFP)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
- ②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원인 경우
- ③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중 이거나 연구책임자가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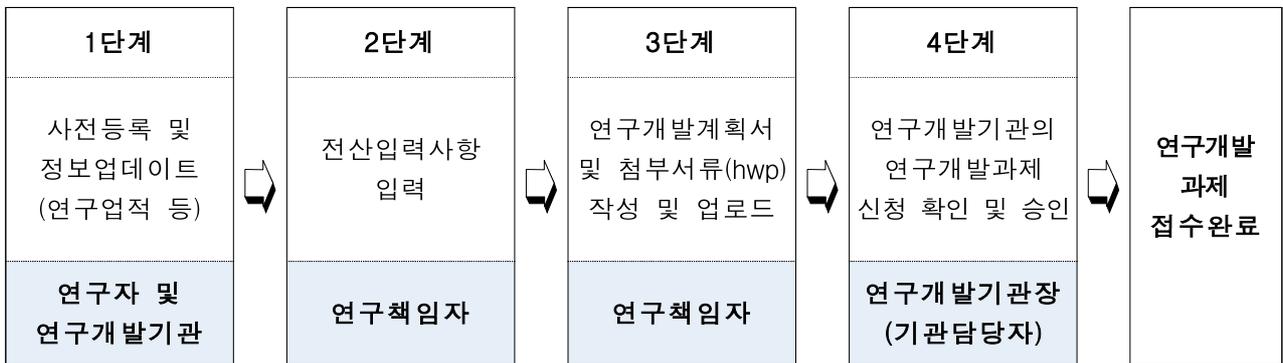
### Ⅲ.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 메뉴에서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연구자 권한’으로 신청 가능

#### □ 신청절차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 □ 서류제출기한

-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 RFP에 따라 신청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마감일을 확인 필요
- ※ 사업별 발표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www.htdream.kr)’에 공지 예정(2022년 9월 중)
- ※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대상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마감일시 (전산입력)	주관연구개발기관 인증 마감일시 (전자 또는 공문제출)
2022년도 제3차 K-Medi융합인재양성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2. 9. 14(수) 18 : 00	2022. 9. 15.(목) 18 : 00

## IV. 관련 법령 및 규정

-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법령과 하위규정을 적용(상세내용은 [www.htdream.kr](http://www.htdream.kr) → 자료실 → 관련법규/매뉴얼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 될 수 있음

## V. 기 타

### □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2.1.1.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frac{\text{기관부담연구개발비}}{(\text{해당 연구개발기관})\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 + \text{기관부담연구개발비}} \times 100$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에산심의요청서'를 작성·첨부하여야 함
  -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는 과제평가단에서 심의, 1억원 이상인 경우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 □ 생명윤리법에 따른 IRB 심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

## VI. 문의처

### ○ 사업공고 열람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단위(RFP) 담당자 안내

공고단위(RFP)	사업내용(RFP) 안내		평가일정 및 절차 안내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현장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육성	산업인력육성팀 강아람	043-713-8425	RnD평가혁신팀 이기곤	043-713-8731